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529
----------	-------

발의연월일 : 2024. 2. 19.

발 의 자 : 박병석 · 김홍걸 · 홍정민
김상희 · 김영배 · 양정숙
이원욱 · 허숙정 · 이원택
한병도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3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 법관, 검사, 고위급 경찰 등 정치적 중립이 특히 요구되는 직에 있는 자가 사퇴시한에 임박하여 사퇴하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와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의 사퇴시한을 확대하여 강화하여 공적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관, 검사, 고위직 경찰의 입후보를 위한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90일까지에서 선거일 전 6개월까지로 확대함(안 제53조제1항).

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기 위한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30일까지에서 선거일 전 2개월까지로 확대하되, 법관 · 검사 · 고위직 경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3개월까지로 더욱 강화함(안 제53조제2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90일”을 “90일(제1호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 중 법관,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차장·수사처검사,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일”을 “2개월(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 중 법관,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차장·수사처검사,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3개월)”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u>90일</u> 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選舉와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 國會議員이 그 職을 가지고 立候補하는 경우와 地方議會議員選舉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에 있어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이 그 職을 가지고 立候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 ----- -----90일 (제1호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 중 법관,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차장·수사처검사,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6개월)----- -----. ----- ----- ----- ----- ----- ----- ----- ----- -----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u>30</u>	② ----- ----- -----2개

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 4. (생략) ③ ~ ⑤ (생략)	<u>월(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 중 법관,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차장·수사처검사,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3개월)-----</u> -----.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